

담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. 5. 13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담양군 내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수를 확대하고, 이를 통한 소비 촉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기존 “상업지역 내 점포수 25개 이상,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20개 이상”에서 “10개 이상”으로 변경 (안 제26조)
- 나.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에 “군수는 면적 산정할 때 지역 여건과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, 주차장, 광장,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.”을 신설(안 제26조)
- 다.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“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들에게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 제12호에 규정된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.”를 신설 (안 제28조)
- 라.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중 “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점포가 10퍼센트 이상일 경우”에서 “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”으로 변경(안 제30조제1항제3호)
- 마. 기타 띄어쓰기 및 자구 정비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5. 5. 13. ~ 5. 18.(5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8일
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 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5년 5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담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및 그 시행령·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“온누리상품권”이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제2조제12호에 따른 발행물을 말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14일전”을 “14일 전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점포를 본래 용도 외의 창고 등으로 사용한 때

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제26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되어야 한다.

2. 군수는 면적을 산정할 때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, 주차장, 광장,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.

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들에게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규정된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.

제30조제1항제3호 중 “1년”을 “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”으로, “휴업한 점포가 10퍼센트 이상일”을 “휴업하는”으로 한다.

제32조제1항 중 “시장·상권 활성화구역·상점가”를 “시장·상권활성화구역·상점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및 그 시행령·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	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13. (생략) <u><신설></u>	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13. (현행과 같음) 14. “온누리상품권”이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발행물을 말한다.		
제9조(휴·폐업 및 주소변동신고) ① 사용자는 점포사용을 포기하거나 허가기간 내 휴·폐업하고자 할 때는 <u>14일전까지</u>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		제9조(휴·폐업 및 주소변동신고) ① ----- ----- ----- <u>14일 전</u>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		
제10조(사용제한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장사용을 정지할 수		제10조(사용제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	

있다.

1. ~ 4. (생략)

5. 점포용으로 사용하지 않고
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한 때

6. ~ 11. (생략)

② (생략)

제26조(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)
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「소상공인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에서는 25개 이상,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20개 이상 밀집되어야 한다.

<신설>

<신설>

제28조(골목형상점가 지정) ① ·
② (생략)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점포를 본래 용도 외의 창고
등으로 사용한 때

6. ~ 11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)
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
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
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
포가 10개 이상 밀집되어야
한다.

2. 군수는 면적을 산정할 때 지
역 여건과 점포 특성을 고려
하여 도로, 주차장, 광장, 공원
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.

제28조(골목형상점가 지정) ① ·
②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30조(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3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점포가 10퍼센트 이상일 경우

② (생략)

제32조(설립) ① 법 제65조에 따라 시장·상권 활성화구역·상점가의 상인회(이하 “상인회”라 한다)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.

② (생략)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들에게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규정된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.

제30조(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) ① -----

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--- 휴업하는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2조(설립) ① -----
-- 시장·상권 활성화구역·상점가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